

\* 신규대조표

구분	기준	변경
3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	<p>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</p>	<p>◆ 다음 각 호 수정</p> <p>3. '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' 문구 삭제</p> <p>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삭제</p> <p>기존 5호~9호는 4호~8호로 변경</p> <p>9. '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' 전체 추가</p>
4. 개인정보처리 위탁	-	<p>◆ '재위탁 업무 없음' 문구 추가</p>
16.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	- 본 방침은 2023년 09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.	<p>◆ 변경 이력 수정</p> <p>- 본 방침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. 추가</p> <p>-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(2023년 09월 13일 ~ 2023년 11월 20일) <u>신규대조표</u> 추가</p>